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40

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조승래·황정아·장철민

박정현 • 진선미 • 이정문

홍기원 • 한준호 • 송기헌

이기헌 • 복기왕 • 위성곤

박홍배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(이하 "특구"라 함)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함.

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,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(이하 "전문연구개발인력등"이라 함)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.

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·유치를 위한 종합적 인 근거가 미흡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·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,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 치·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,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6조, 제6조의2, 제10조, 제22조, 제22조의2 신설, 제22조의3 신설, 제25조의2 신설, 제48조).

법률 제 호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제5호 중 "양성에 관한 사항"을 "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 (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"투자유치 및 정주(定住)를"을 "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・활용을"로 한다.

5의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

5의3. 특구의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

제6조의2제2항제14호 중 "투자유치 및 정주를"을 "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·활용을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특구에 있는 대학"을 "특구의 대학·연구소 및 기업"으로, "양성"을 "양성·유치"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"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"을 "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·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"으로 한다. 제22조제1항 중"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"를

- "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(이하 "외국인학교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·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 및 제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·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 - 1. 외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
 - 2. 해당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
 - ③ 특구의 대학·연구소 및 기업 소속 직원의 자녀로서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내국인이 해당 특구의 외국인학교로 전학·입학하려는 경우 우대하여야 한다.
-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2조의2(전학·입학 편의 제공)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·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·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2조의3(문화예술·관광시설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·도서관·

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, 관광·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 제 3조에 따른 관광·숙박업을 위한 시설에 한정한다), 위락시설 및 체육시설(이하 "문화예술·관광시설"이라 한다)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·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.

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 ①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대학·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 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(査證) 발급의 절차 및 1회 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 할 수 있다.

②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제1항을 적용받아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8조제1항제2호바목 중 "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"을 "전문 인력·사업화 지원 인력·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·유치,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특구육성종합계획) ① (생	제6조(특구육성종합계획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	2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	
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특구의 대학・연구소 및 기	5
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	
사업화 지원 인력의 <u>양성에</u>	<u>양성 및 유</u>
관한 사항	치에 관한 사항(연구장려금
	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)
<u><신 설></u>	5의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
	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
	<u>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5의3. 특구의 대학·연구소 및
	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
	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
	향 조사에 관한 사항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7. 외국인의 <u>투자유치 및 정주</u>	7
(定住)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	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
관한 사항	<u> 치・활용을</u>
8. ~ 15. (생 략)	8. ~ 15. (현행과 같음)

- ③ ~ ⑤ (생 략)
- 제6조의2(특구개발계획) ① (생략)
 -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1. ~ 13. (생략)
 - 14. 외국인의 <u>투자유치 및 정주</u>를 위한 환경조성계획

15. · 16. (생략)

③ ~ ⑧ (생 략)

제10조(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·연구소·기업 간 교류·협력 체계의구축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추진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<u>제5장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</u> 활 여건 개선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2(특구개발계획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 <u></u> 투자 활성화 및
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
유치·활용을
15. • 1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0조(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
력 등의 양성 및 대학・연구소
·기업 간 교류·협력 체계의
구축) ①
<u>특구의 대학·연구소 및</u>
기업
<u>양성 • 유치</u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 성·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제22조(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 제22조(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 영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 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 여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60조 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 여 부지의 매입.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 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환경 조성 등

영 지원 등) ① -----

--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60조 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(이하 "외국인학교"라 한다)-----

- 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 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 성 • 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 및 제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 ·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- 1. 외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최 소한의 기간
- 2. 해당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 에서 차지하는 비율
- ③ 특구의 대학・연구소 및 기

 ② (생 략)

 <신 설>

<신 설>

업 소속 직원의 자녀로서 제2 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내국인 이 해당 특구의 외국인학교로 전학·입학하려는 경우 우대하 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22조의2(전학·입학 편의 제공)
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
이전하는 대학·연구소 및 기
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
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
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「초
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
학교에 전학・입학을 하는 경
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
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3(문화예술·관광시설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 지방자 지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 회관·도서관·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, 관광·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관광·숙박업을 위한 시설에 한정한다), 위락시설 및 체육시설(이하 "문화예술·관광

<신 설>

시설"이라 한다)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· 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 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.

제25조의2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 ①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 구하고 특구의 대학·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 증(査證)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정할 수 있다.

②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제1항을 적용받아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.

제48조(사업) ① 진흥재단의 사업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(생략)
- 2.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가. ~ 마. (생략)
 바.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

교육

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

사.·아. (생략) 3. ~ 5. (생략) ② (생략)

제48조(사업) ①
2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바 <u>전문 인력·사</u>
업화 지원 인력·해외 고
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
·유치, 고경력 과학기술
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
사.・아. (현행과 같음)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